

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보도 일시	2022. 8. 23.(화) 17:30	배포 일시	2022. 8. 23.(화) 11: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연준(02-2100-2950)
<총괄>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02-2100-2953)
	은행과	급경자	사무관 권나림(02-2100-2954)

금융규제혁신

-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주요 내용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②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
 - ①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 지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핀테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
 -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
 -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
 -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관련 규제개선

1. 회의 개요

- □ '22.8.23일(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23일(화) 15:00~16:30 /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붙임 참고):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핀테크협회장, 금융연·자본연 부원장 등
 - **안건 : 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부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과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도 보고)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 □ 오늘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 **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경과 >

업 계	의견 수렴 경과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생보, 손보, 보험대리점	보험업계 면담(3.17),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생손보업계 간담회(8.22)* * 보험대리점협회 참석			
증권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핀테크, 빅테크	핀테크 보험관련 면담(5.11), 테크업계 간담회(8.4),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소비자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산업분과회의(8.18), 금융규제혁신회의(8.23),			

2. 주요 참석자 발언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누구를 위한 규제혁신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산업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당부하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1)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2)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아울러,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김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이라고 지적하면서.
 -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그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심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 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 마지막으로, 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며,
 - * 이용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추천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 또는 방법
 -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안건1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은행)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지원 (보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지원

(카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지원

오리인 플랫폼 금융상품 쥐1업 시범운영

(예금·보험·P2P) 샌드박스(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펀드) 투자중개업 인가 검토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통합앱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

- ▶판매주체 명확히 고지·안내
-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구축
- ▶피해발생시 운영사와 판매사 공동배상

플랫폼 비교·추천 관련 리스크 관리

- ▶위탁금융회사를 통한 관리 강화
- ▶ 금소법 등 기존 규제 적용
- ▶플랫폼 특성 고려한 새로운 규제 도입

1.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 ◆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은행]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① 은행이 다양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 해석을 통해 가능해지는 부수업무 예시 >

- o 전자문서중계업무 :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
- 본인확인서비스 :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회원가입, 금융거래 등)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서비스(예: 통신3사 PASS)
- 각종 플랫폼 서비스 : (예)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

- ②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보험사·카드사 등 통합앱에도 동일 적용)
 - * ①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 면제, ②금소법 상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③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을 명확히 허용
- ③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겠습니다.
 - *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핀테크, 통신·유통 등과 형평 고려
- ② **[보험]**「헬스케어 금융플랫폼」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복지부 협의 추진)하고.
 - * 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질병위험 분석 등) 등 서비스 허용
 - ②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 * 개인 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시설 운영 등
 - **③**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 * 건강관리기기(예 : 스마트워치) 수준으로 제공한도 상향(현행 3만원 → 20만원)
- ③ [카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 ②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법 개정 검토)
 - ③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혁신금융서비스 시행중→법 개정 검토)
- ④ 【지주】지주 內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유권해석)
 -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 ◆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현황)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 (개선)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겠습니다.
 -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 * (예금)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건전성 취약 금융사가 고금리로 자금 유치 등 (보험) 불완전판매(특히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계열사 몰아주기 등 우려
 - ※ 펀드상품은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
- □ 주요 상품별 추진방안

● 예 금

-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 대출상품 중개업: 핀테크기업 외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도 영위중
-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되,
 - *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보험

-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 보장범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고 허용하되,
 - * 예: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상품
-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①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

- 1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 ②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 ③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중층 관리체계" 구축

- →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규율 + 플랫폼 직접 규율(기존&새로운 규제)
- ①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금감원)
- ②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적용하겠습니다.
- ③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부과, 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 □ 1-3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진입요건 및 부가조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건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1. 심사체계 개편

- ◆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 ①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 ② 금융위·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 ③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 '소비자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겠습니다.
 - * **혁신성**: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을 **넓게 인정**하되, **동일·유사**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 서비스에 대해 '혁신성' 인정(제도화 예정시 등 예외 허용)
 - * 소비자편익 :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심사

2.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 특례 종료 후 처리 방향을 조기 **통보**하고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특례 종료 이후 처리방향을 조기 확정·통보하여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 혁신위·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 사업 종료 시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시 사업자의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제출받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②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지원 체계 개편

- ◆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혁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의 경우, '전문가 지원단'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全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②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內 시스템 구축)
- ❸ 旣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의 자체성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기별 성과점검, 불가피한 사유 없는 서비스 개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4. 향후 계획

- □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 혁신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 ※ (별첨) ❶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②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❸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 4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
 - **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참고1

예상 질문 및 답변

□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관련

-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예정입니다.
 - * (보험) 보장범위: 소비자 피해우려가 큰 상품(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제외 (예금) 업무범위: 실명확인, 예금수취 제외, 상품범위: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
 - ② 그 외에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

보 험	예 금		
(플랫폼→보험사) ►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 금지			
서비스 변경·중단시 사전 통지보험사에 사전안내 없이 알고리즘 주요내용 변경 금지 등	▶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의무 부과 ▶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플랫폼간) ▶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보험상품모집위탁 강요 금지 ▶ 경쟁 플랫폼에 저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판매비중 제한		

□ 또한,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금융상품 판매권유 업무를 위탁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플랫폼이 관련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2.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금소법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예: 코스콤)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알고리즘 요건(감독규정 §6⑦)

- 1.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
- 2.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 3.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 4.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①·②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 이와 함께,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방안을 도입·유영*할 예정입니다.
 - * (i) 특정 보험상품 추천시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안내
 - (ii)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화면·UI시스템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모두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지?

플랫폼은	오프라인	영업장 등	-이 필요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영업의	특성	상
기존 채널	대비 중	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	로 예상	됩니다.			

- □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수료 부담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

보 험	예 금
사업비와 수수료를 대면채널 대비 절반수준으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의무
제한 플랫폼과 CM 채널 보험료를 비교·공시	부과

4.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 □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 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 다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원활한 손해보상 청구를 위해 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45)

②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관련

- 5.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은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 채널과 갈등을 유발하며 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 □ 설계사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대리점업계, 핀테크업계 모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 o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우선원칙에 입각하고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이 조화롭게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 6.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비교하여 개별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 비교추천을 해야 하는데 취급가능상품이 제한되는 것 아닌지?
- □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상품에 한해 상품범위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 * 예: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구체적 상품범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추후 결정)
 - 참고로 해외에서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취급** 가능 상품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 일본은 新금융서비스중개업을 도입하면서, 변액보험, 외화보험, 종신보험, 기초율 변경권이 포함된 제3보험, 고액계약 등 전문적 설명이 필요한 상품 취급 제한
- □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상품유형**은 CM용 상품뿐 아니라 대면용, TM용 상품까지 모두 허용할 계획입니다.

- 7. 푸쉬영업이 이루어지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비교·추천역할만 수행하는 플랫폼에도 방카슈랑스 규제(특정사 판매비중을 25%로 제한)를 적용하는 것인지?
-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플랫폼과 계열사간 독점적 제휴 등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 불공정경쟁 등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계열사 상품 위주 비교·추천)되고 중·소형보험사의 시장 진입 제한 등이 우려됩니다.
- □ 이에 따라, 시장영향력이 높은 **대형플랫폼***에 한해 **특정사에 편중된** 보험상품 추천 등을 방지하기 위해,
 -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도 자산 2조원 초과 은행에 한해 적용 중
 - 플랫폼의 특성과 방카슈랑스 규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8. 판매채널, 상품 제한이 없는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플랫폼에 대해서만 별도 제한을 하는 이유는?

- □ 온라인 플랫폼과 일반 보험대리점은 **상품취급 범위**, 고객에의 노출· 영향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차별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보험대리점과 달리 플랫폼은 다양한 상품과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므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대한 잠재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 보험대리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접속** 하는 반면,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마케팅에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과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도입('03)시에도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경쟁 가능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9. 소규모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빅테크기업과 동일하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닌지?

- □ 빅테크와 핀테크기업의 **시장영향력 차이**, 규제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보험상품 취급시 **영업규모**(예: 비교·추천을 통해 계약체결된 금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 특정사에 편중된 비교·추천 방지규제(방카 슈랑스규제 등 고려)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10.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 □ 플랫폼은 거대한 가입고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시장영향력이 막대합니다.
 - 따라서,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 시범운영이 필요합니다.
 - * 비교·추천을 통한 부당승환계약 증가, CM용 상품 대비 보험료가 비싼 대면상품 위주 추천 등
- □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시범운영하고,
 - **운영경과를 충분히 보아가며 보험업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관련

- 11. 플랫폼 예금 중개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 으로 과도한 자금쏠림(머니무브)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 해당 이슈는 **업권 의견수렴**, **분과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서 여러 논의를 거쳐 **아래**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은 중개 상품에서 제외*합니다.
 - * 저축성상품(정기예·적금) 우선 시행후 상품범위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 예정
 - ② 은행 대비 회사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3%로 제한*(은행: 5%)합니다.
 - *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여 업권을 제한하지 않되 모집 비중을 차등적으로 제한
 - **③**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중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과도한** 자금유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④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관련

- 12.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하면서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약관· 거래조건 등을 발급하면 고령자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 고객이 거래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 필요시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거래조건 등 문서 발급 절차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 현재 고령자와 관련해서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등을 운영중
 - 1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리워드를 확대(3→20만원)하는 경우, 다른 보험상품 계약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하여 수익 및 비용을 관리 중입니다.
 - * 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연계하여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 이에 따라,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관련

14. 특례 범위 제한이 혁신 동력을 위축하는 것은 아닌지?

- □ 특례 범위 제한의 취지는 **사업자·소비자·투자자 모두**가 안심하고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위험** 등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 □ 최초 지정 단계에서 잠재위험에 비례한 적정한 테스트 규모를 설정하되, 안정성·소비자보호 등 리스크 관리가 확인된 경우, 신속한 조건 완화 및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 ⇒ 본래 취지에 맞게 더 활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내 손 안에 금융백화점

금융회사 ·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가다양한금융상품과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况公生!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 때문에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부수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등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범위 확대



통합금융 플랫폼을 통해 국민연금 기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앱에서 종합금융서비스(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를 이용할 수 있어요

况给: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 서비스별로 별도의 앱설치 필요 이전 규제혁신이 필요배신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금융 ·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허용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

一和树树的一种树园

서비스별로 각각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집니다!



✓ 보험사를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况公生!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자회사는 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보험사의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에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자회사 소유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인가정책 운영

于加越心 呼机风

건강관리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및 유관서비스제공,관련시설운영등 다양한업종이영위기능해집니다!



雅始!

보험계약자에 보조기기 등 혜택 제공이 제한되어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혜택 상품 제공이 어려움 이전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하여 충분한 리워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건강증진형 가이드라인 개정)

규제혁신이 이루버지땐

건강관리기기수준으로 제공한도가확대됩니다! (현행3만원→20만원)



弘

○ 여전사의 기업·법인 신용정보 활용이 제고될 수 있어요

双层人生之?

여전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가 넓어 여전사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배요!

여전법상 신용정보 범위를 신정법상 개인신용정보와 동일하게 조정



기업·법인관련정보를활용하여 고객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습니다!



☑ 한 카드사 앱에서 다양한 카드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어요

况给这些?

여전법상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의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카드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 ाच्य त्राविशा यहिताही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타 카드사 상품 추천을 허용하되, 과당경쟁, 이해상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 법 개정 추진)

于加越心 中外风险

한 카드사앱에서 **[[양한 카드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상품을 비교·추천 받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况公益。

대출 · 보험 등과 달리 예 · 적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교 · 추천 서비스가 제한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 · 적금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소비자에게 **맞춤형 예·적금상품 추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 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对强人适此?

플랫폼(예: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비교·추천 등 보험상품 취급이 제한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 허용

구제혁신이 이루어지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아 기장 적합한 보험상품 기입이 기능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도 투자가 가능해요

况 人性吗?

이전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업무가 제한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소비자가보다**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투자를 할수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플랫폼 비교·추천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대형 플랫폼의 금융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단순한 상품만 판매 허용
-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장평균금리 등) 제시
- 손해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 통합앱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소비자가 혼동 ·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 · 안내
- 통합앱 관련 민원 · 분쟁 해결 절차(고객상담), 정보보호 · 보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 · 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전 제도화 여부를 알 수 있어요

况从这些?

특례 적용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

17

于对时处的 0年时以时

제도화여부에 맞춰 사업자가 **향후 서비스 향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况,这些?

한시적 특례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지나친 규모 확대 이후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이 증대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지정 심사시에 실질적 검토 진행



혁신금융서비스시업종료에따른 시장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예비 핀레크 사업자에게 "담당 멘토"가 지정돼요

双层人生之?

중소 핀테크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자체에 어려움 토로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전담 전문가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



开加转起的 明新以时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제도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레스트 할 수 있어요

观点: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제 구현·사업화가 가능할지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건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데이터', '분석도구', '멘토링'을 제공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기회 부여

于对特色10年时从时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참고3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	소속·직위	
박병원(의장)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
심 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7명)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채경옥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前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 KAIST 겸임교수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재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구용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협회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이사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A 7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연구 기관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인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김연준(02-2100-2	95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02-2100-2	953)
			사무관 권나림(02-2100-2	954)
<공동>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이동엽(02-2100-2	96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02-2100-2	945)
<공동>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02-2100-2	990)
		담당자	사무관 고선영(02-2100-2	991)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오유정(02-2100-2	841)
		담당자	사무관 한필윤(02-2100-2	859)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주영(02-2100-2	530)
		담당자	사무관 오형록(02-2100-2	533)
<공동>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02-2110-2	66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석(02-2110-2	66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제호(02-2110-2	830)
		담당자	사무관 김명지(02-2110-2	843)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용태(02-3145-7	120)
	디지털금융혁신국	담당자	팀 장 김택주(02-3145-7	125)



